



· 문화예술계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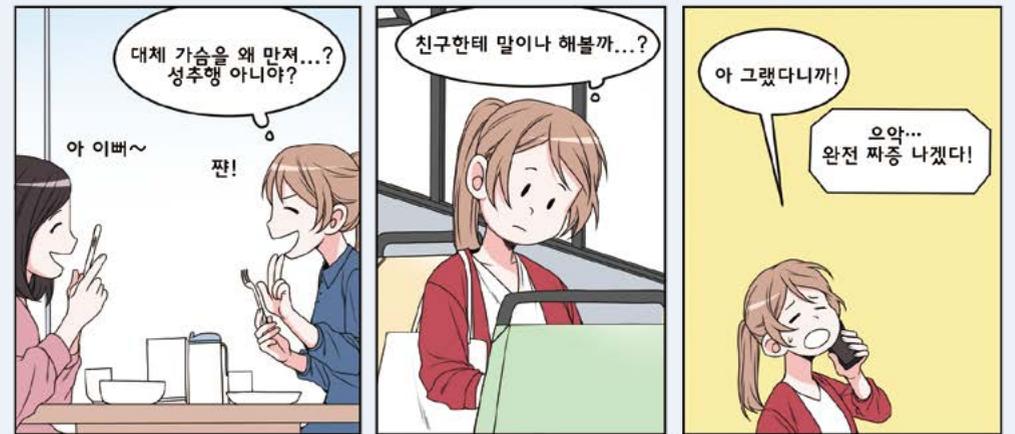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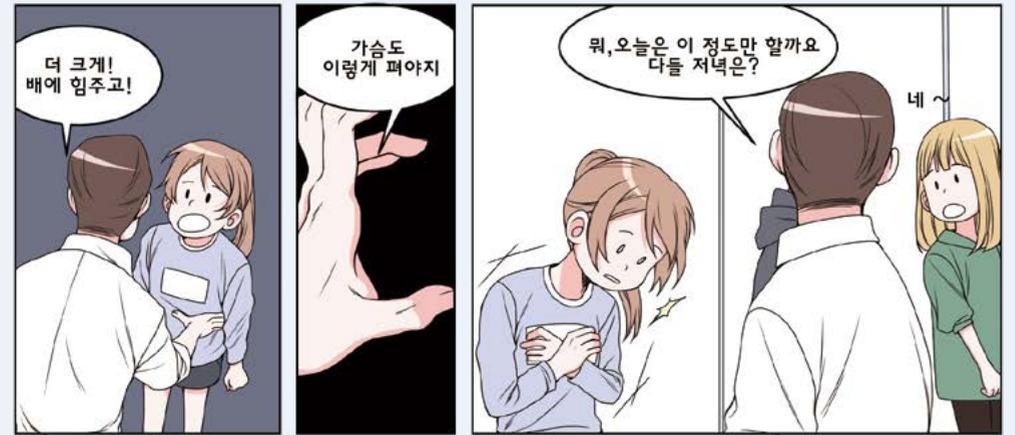


Contents

Part 1 문화예술계의 일면	3
Part 2 성희롱	10
Part 3 성폭력	17
Part 4 2차 피해	30
Part 5 사회의 책임	37
Part 6 #me too 가치 이어가기	43
Part 7 성폭력 발생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46

PART
01

문화예술계의 일면



문화예술계의 일면에는



예술적 행위와 개인의 성적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소수 권력자의 영향이 큼니다

예술적 업적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무마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징계를 할 만한 시스템이 미흡합니다

특정개인에게 계약과 고용, 인력선발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프리랜서, 소규모, 민간, 무소속, 개인교습 시스템 등)

학교와 업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계의 지형이 좁고 일이 인맥위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관련 직종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대일, 혹은 일대 소수의 도제식 교육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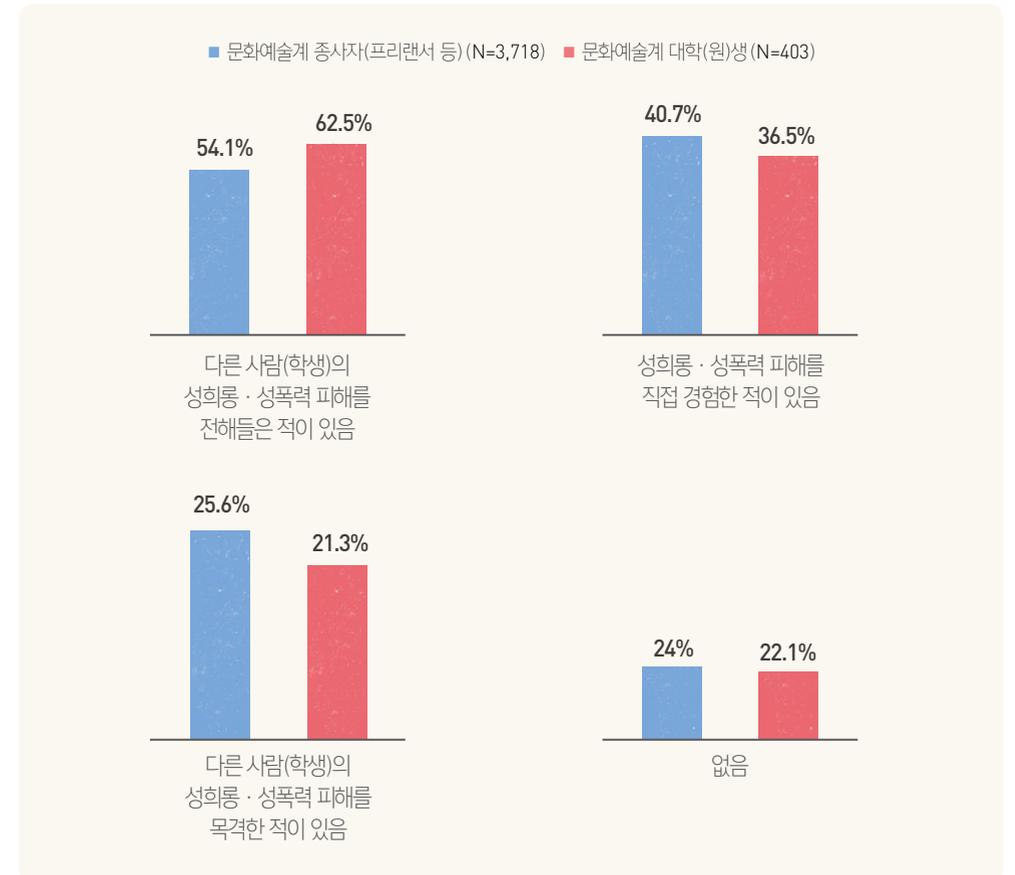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이러한 문화예술계의 일면은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힘의 불균형을 만들고 개인적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적극적 대처를 어렵게 합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4,380명 중 문화예술계 종사자 3,718명 및 문화예술계 대학(원)생 403명을 중심으로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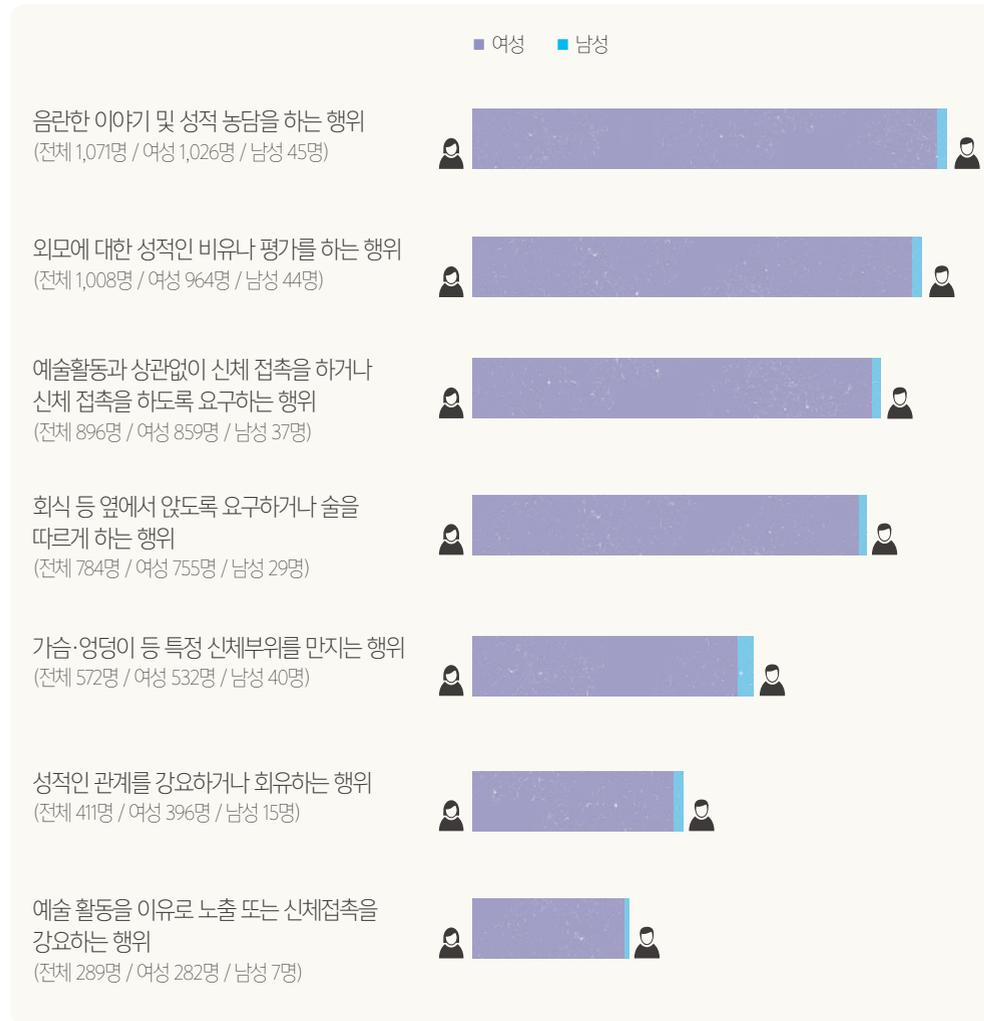
① 3,718명 중 40.7%인 1,513명이 직접 피해를 경험하고 25.6%인 951명이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0명 중 7~8명은 직·간접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 6. 1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본인이 직접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문화예술계 종사자 1,513명 중(복수응답)

②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적 유형이 가장 높았으나 신체적 접촉의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③ 가해자와의 관계는 선배예술가 982명(64.9%), 기획자 및 감독(연출, 편집장 등 상급자)이 794명(52.5%) 등이었습니다.

④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87.6%인 1,326명이 '그냥 참고 넘어감'으로 응답하였습니다.

⑤ 그냥 참고 넘어간 이유는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69.5%인 922명, '문화예술계 활동에 불이익이 우려되어서'가 69.5%인 789명이었습니다. 문제 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2차 피해 등의 염려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막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각해보기

- 문화예술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 선배가 후배에게 성희롱적인 말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후배가 성폭력 피해를 말하며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PART
02

—
성희롱

1. 성희롱이란
2. 어떻게 할까요
3.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 개 몸매 맛있게 생기지 않았냐? 근데 얼굴이 좀 모자란 듯
- ▶ 아 봉지 씌우면 돼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성희롱이란



-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관련법에 따르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 >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업무관련성이란?

우리 법원은 “업무관련성”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 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방지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장 내가 아니더라도 업무를 위한 만남, 술자리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

■ 시각적 성희롱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

■ 육체적 성희롱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하지만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엔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사적 처벌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 됨

■ 기타 성희롱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



Q 음란한 농담, 눈빛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Q 성희롱도 형사처벌이 되는건가요?

A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어 강제추행까지 이르지 않은 성희롱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희롱의 피해가 있었던 경우 민사소송(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성희롱 중에는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어 형사적 처벌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 거부 의사 표현

성희롱 가해자들은 친밀감의 표시였다거나 피해자도 즐겼다고 주장하므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고, 직접 표현하기 어렵다면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의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상황을 기술하고 당시 나의 심경도 씁니다. 추후 필요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 당시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내용 등을 보관해 놓으며 누군가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자세하게 털어 놓거나 이메일에 그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 그 당시 나누었던 대화를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 사건을 기록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작성하며, 그 상황에 누가 있었는지, 목격자가 누구인지, 피해를 당한 이후에 자신의 심경이 어떠하였는지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 가능하다면 목격자들에게도 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부탁하여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증거로 수집합니다.

■ 도움 구하기

- 학교나 직장 등 조직에서 발생한 사건은 조직 내 성고충상담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등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센터

☎ 1670-5678

①번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②번 :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③번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 02-418-1119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 없이 133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학교, 군대, 자원봉사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장 즉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구제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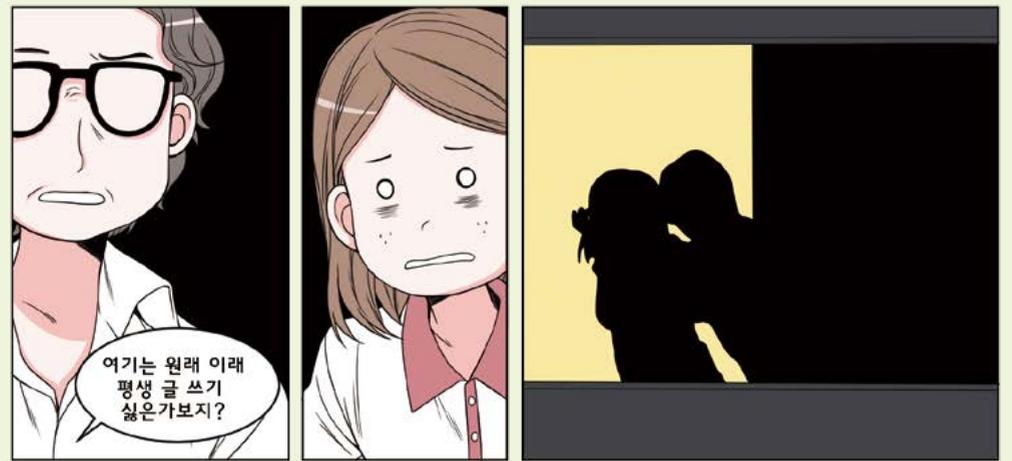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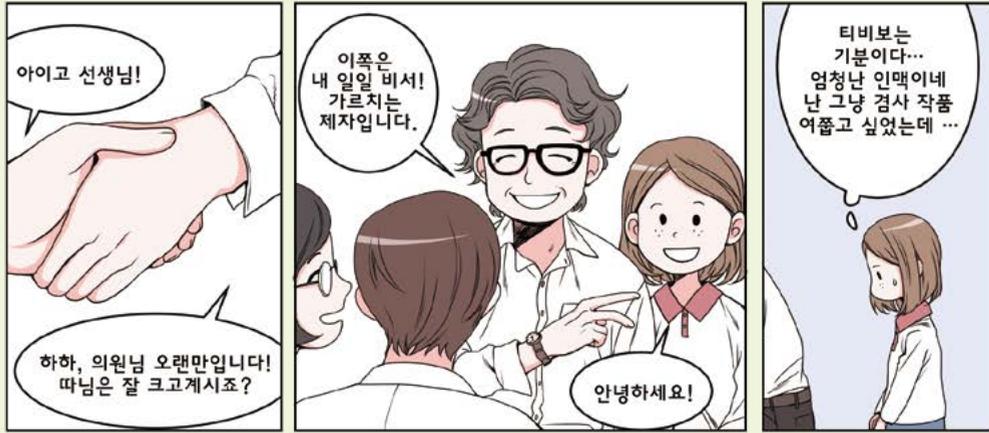
☎ 02-735-7544 📄 www.women1366.kr/metoo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기관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담당합니다.

PART 03

성폭력

1. 성폭력이란
2. 어떻게 할까요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¹⁾

■ 힘이란?

계급(사회적 지위), 근속연수, 예술경력, 작품 인정, 예술계안에서의 인맥, 예술적 평판, 성별, 경제력 등을 이야기하며 인간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를 약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결정할 권리입니다.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련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유 형	내 용	법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시키는 행위	형법 제297조 등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형법 제 297조의 2 등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접촉, 강제 키스,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키게 하는 행위,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형법 298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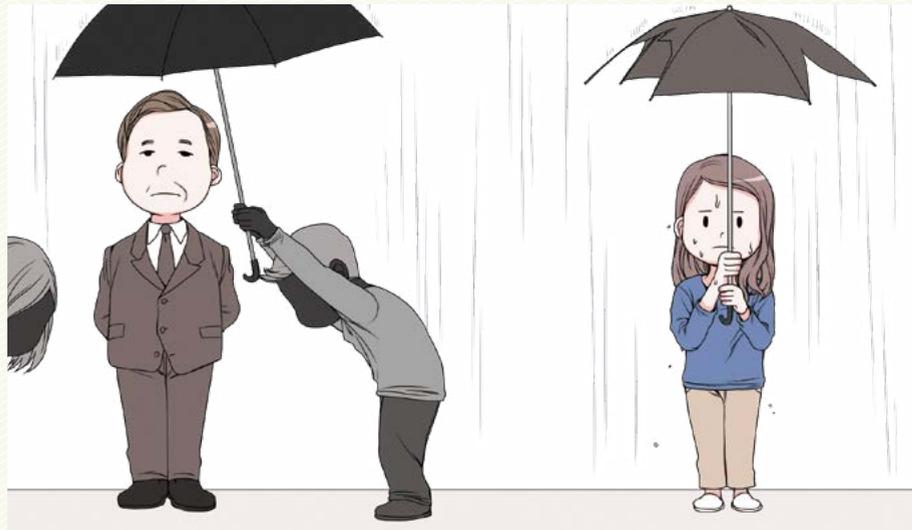
1)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자료집(2018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준강간 /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추행을 한 행위	형법 299조 등
디지털 성폭력	- 카메라등 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②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 13조
	- 음란물 배포, 판매, 전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기타	성적 목적을 위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침입, 스토킹 등	

Q 문화예술계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많이 발생한다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A 권력형 성폭력이란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흔히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수직적 권력관계나 상하관계에 위치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권력형 성폭력이란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에요. 우리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의 권력형 성폭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법적 용어에서 “위계”라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의미하고, 서열 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직역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남성 중심주의의 산업구조와 문화, 소수자에게 집중된 권력, 예술이라는 명분으로 성범죄를 정당화 해 왔던 기존의 관행이 문화예술계의 권력형 성폭력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회식 도중 필름이 끊겨서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경찰에서 심신상실, 항거 불능 상태에서의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A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런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해요. 이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Q 합의한 촬영 수위보다 더 많은 신체부위 노출장면이 작품화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폭력일까요?

A 촬영 전 또는 촬영 과정에서 노출 수위에 대한 협의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구두에 의한 합의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노출에 관한 구두 협의는 있어야 합니다. 촬영은 통상 촬영 대상자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과도한 노출 요구, 촬영을 빙자한 추행이나 불법촬영, 유포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Q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상대방이 몰래 유포하여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폭력일까요?

A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어도 촬영한 상대방이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건 발생



상황 인식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 성폭력 피해인지 의심이 된다면 전문기관인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이하 전문기관)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고려하기 '나는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

-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는지 전문기관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 나에게 사건이 주는 의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 사건 해결에 쏟을 수 있는 시간 체력 정신력, 직장 학교 가족 등의 주변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응급 대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뭐지?'

-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거 확보와 신체적 안전 확인을 위해 응급대응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 시간 안에 해야 할 증거확보, 신체적 외상 진료 및 산부인과 진료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 인력이 배치된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고민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

- 가해자 신고가 고민되고, 법적 진행절차가 궁금하다면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경찰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복 집중 '나는 괜찮은 걸까?'

- 성폭력 피해는 신체적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힘들어진 나를 살피기 위해 상담과 치료를 전문기관²⁾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대응

대부분 성폭력 피해 상황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과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큼니다.

1) 초기진술 확보

- ▶ 피해 후 빠른 시간 내에 성폭력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의논 할 것
- ▶ 피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을 것

2) 물적증거 확보

- ▶ 물적증거란
신체에 남는 증거들(가해자의 음모, 정액, 타액, 콘돔 성분 등),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 증거, 피·가해자 이동반경에서의 CCTV 자료 등
- ▶ 권장사항은
 - 옷을 갈아입지 말 것, 만일 옷을 갈아입더라도 털지 말고 통풍이 가능한 종이봉투에 잘 넣어서 제출하며, 옷이 젖었다면 자연 통풍이나 드라이기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서 종이봉투에 넣을 것, 피해 시 사용한 휴지나 입고 있던 속옷도 넣을 것
 - 몸에 남은 정액, 타액, 체모 등의 수집을 위해 가능한 몸을 씻거나 소변을 보지 말고 방문할 것
 - 구강 접촉(키스, 구강성교 등)이 있었다면, 입 안을 헹구거나 음식을 먹지 말 것
 - 피해 후 최대한 빨리, 늦어도 72시간 이내에는 증거채취 할 것
 - 약물사용이 의심된다면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되는 약물도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로 조속히 방문할 것

2) <Part 7 성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참조

1) 형사소송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에 요구하는 과정

2) 민사소송

성폭력 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는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과정



① 고소 전

· 수사, 재판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소를 결정할 때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② 고소장 접수

·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접수 없이도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럴 경우 추후 항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③ 경찰수사

· 피해자 진술 및 조사 후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고 기타 주변인과 CCTV 등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④ 검찰수사

· 검찰에서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추가조사 등을 거친 후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기소'란 가해자(피의자)에게 유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소제기라고도 말합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불기소처분으로는 공소권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고소인은 불기소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⑤ 재판단계

· 수사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에서는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은 3심제도이며, 판결선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나 피고인(가해자) 모두 제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2심) 재판이 진행되며,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하여서도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A 대부분 형사절차를 처음 겪는 분들이 많아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소과정에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시작부터 함께 한다면 힘든 형사 절차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조사하라고 오라는데 유의할 점이 무엇일까요?

A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할 경우,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피해진술”입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질문하고, 피해자는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목격자나 현장을 그대로 촬영한 CCTV 영상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입니다. 출석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육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정리를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피해사실을 잘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인데 법원에서 증인출석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소환 날짜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사유를 소명하여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피고인(가해자)이 공소사실(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증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진술하였던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 읽어보고 나가시는 것이 증언에 도움이 됩니다.

Q 합의할 경우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나요?

A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가해자)과 합의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시면 피고인의 형량은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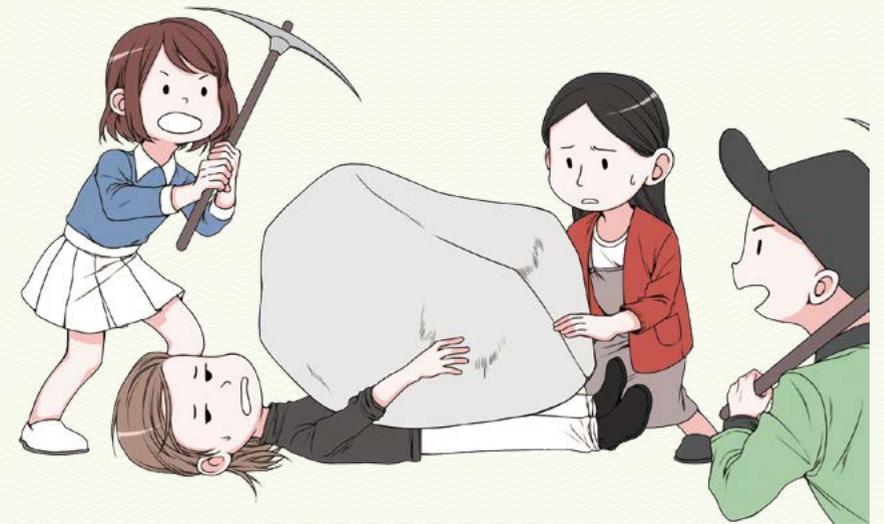
Q 현재 형사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보상 관련하여 민사도 진행할 계획인데 어느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가해자의 불법행위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형사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오래된 사건은 어떻게 할까요?

A 친고죄 개정 이전의 오래된 사건의 경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공소시효 및 고소 기간이 도래 하여 가해자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차 피해와 가해자의 사회적 처벌을 위해 어렵게 용기 내어 공론화 하여도 명예 훼손과 같은 역고소를 당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혼자 어렵다면 관련기관의 전문가에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PART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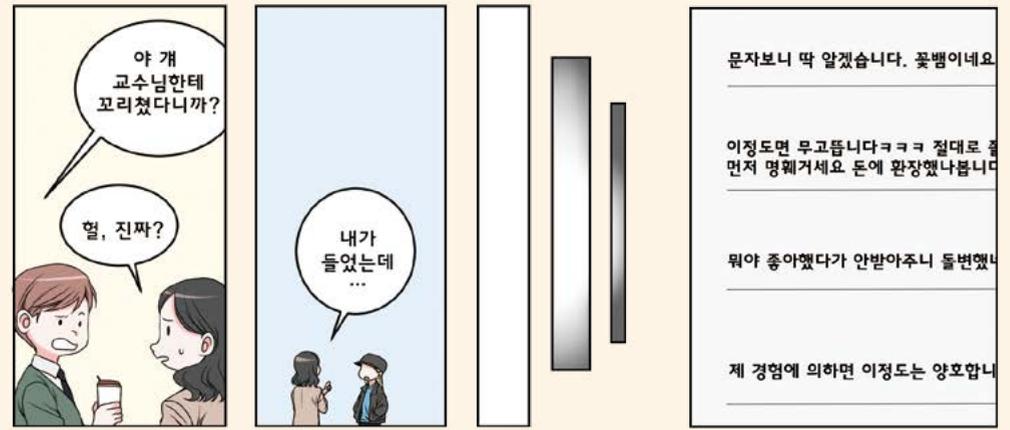
2차 피해

- 1. 2차 피해란
- 2. 어떻게 할까요

2차 피해란

- 2차 피해는 사건 발생 이후 가족, 친구, 동료,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등에서 보이는 부정적 반응(피해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주장,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과 가해자의 2차 공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 주변의 시선과 소문에 의한 심리적 어려움, 가족관계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나아가 피해 대응을 위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직이나 법적 분쟁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법적 어려움 등 다양한 범주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것, 신고에 대한 보복과 협박을 하는 것,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모두 심각한 2차 피해라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역고소 대처하기

■ 보복과 협박

가해자의 보복과 협박에 대해서는 두려워 말고,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사정을 잘 설명한 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예훼손

미투운동의 열기가 뜨거웠던 2018년, 미투만큼 자주 언급되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SNS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등 고백과 폭로의 형식을 띠는 “미투”는 필연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의 형식을 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역고소하는 방식으로 형사 대응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명예훼손죄의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①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는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 가치판단은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히 특정인에 대한 내 의견, 주관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OO 같은 놈, OO 새끼”와 같은 욕설만 했을 경우 명예훼손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에 대한 대처

실무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사실과 개인의 단순한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과 뒤섞인 경우의 판단은 더욱 더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있지만, 결국 이러한 판단기준도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다 보니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시한 이야기가 진실한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 역시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피해자는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로 피소를 당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잘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잘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③ 사이버 명예훼손죄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 많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속칭 사이버 명예훼손죄라 불리는 이 죄에는 앞서 언급한 요건 외에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추가되어야 성립합니다. 형법상 출판물(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의미)을 수단으로 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법적 상담은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무고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거나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해서 신고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라도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신고행위가 허위사실에 기초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한 후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 대처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PART 05 —

사회의 책임

1. 성폭력은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2. 돕지 않는다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3.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책임입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 상대와 내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알 것
- 나 혼자 친하다고 생각하며 일방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것
- 상대의 침묵이 곧 동의는 아님을 기억할 것
- 상대는 나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할 것
-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을 것
- 나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 권력이 상대에게 강요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자문할 것



돕지 않는다면 우리의 책임입니다(2차 피해 예방)

- 성폭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할 것
- 피해자의 품행을 탓하지 말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 피해자다움을 피해자에게 강요하지 말 것
- 피해자를 이야깃거리로 삼지 말 것
- 누군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거짓 소문을 말할 때 제지할 것
만약 직접 제지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맞장구치거나 반응하지 말 것
- 피해자가 양가감정³⁾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
-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지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
- 내가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는 범위에서 피해자를 도울 것
(직접 돕기보다 전문상담기관에 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은 도움일 수 있음)
- 피해자가 참아야 한다거나 사건을 덮도록 강요하지 말 것



3) 양가감정은 어떤 대상에게 서로 대립되는 두 감정이 동시에 혼재하는 정신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람에게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느끼는 것입니다. <위키백과>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책임입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
(2018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자)

- 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수를 의무화 합니다
-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잘못된 회식 문화와 음주 문화를 반성하고 개선합니다
-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가해자의 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사회적 방안을 고민합니다
-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합니다
- 열린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민주적이고 수평적 의사소통 문화를 만듭니다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행동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밥 먹으면서 일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 술자리였다

예술계 교육부터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선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부터 배운다. 내 주장을 하기 어렵다.

아직 나오지 못한 미투가 더 많다,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야 한다

다 같은 바닥이라 얘기하기 쉽지 않다. 피해자가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게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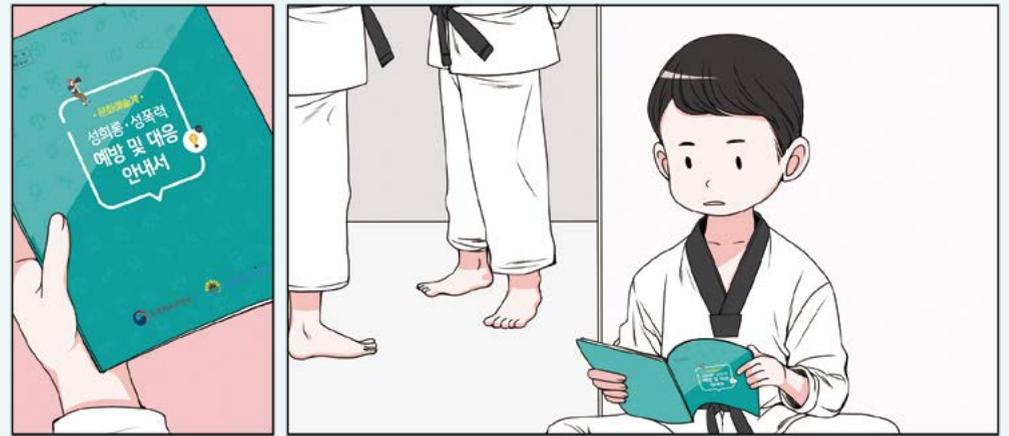
피해자만 이 바닥을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 것 같다

생활수칙 선서

- 성희롱과 친밀감을 구분하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 회식 때 음주나 술시중을 강요하지 않는다.
- 성차별적 농담, 음담패설을 삼간다.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동료의 사생활에 관한 루머를 퍼뜨리지 않는다.
- 동료의 신체나 외모를 평가하지 않는다.
- 업무이야기는 숙소 등 밀폐된 장소가 아닌 개방된 장소에서 한다.
- 고정된 성역할과 나이를 강조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 성희롱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가해자를 저지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 영화 <리틀 포레스트> 촬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10가지 생활수칙



문화예술계의 Me Too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고 나누며 대응해 나아갈 때
 피해자가 용기를 내고
 가해자도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PART
07

**성폭력 발생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센터
2.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예술인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는 성희롱·성폭력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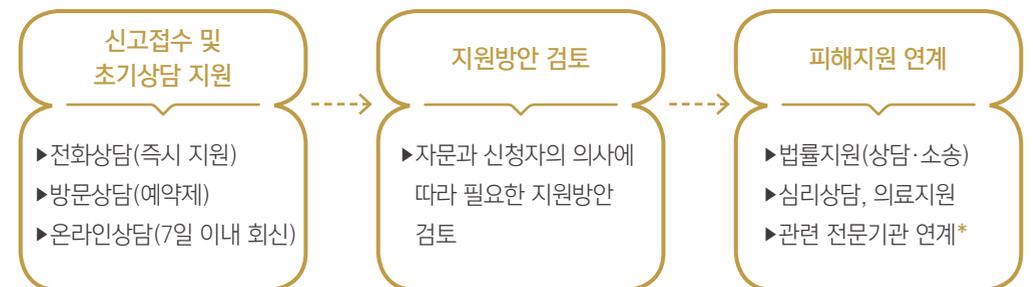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 및 예비 예술인
- 예술계 종사자 및 문화·예술관련 협·단체
- 출판 및 관련 산업 종사자

■ **주요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지원: 성폭력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지원 ◦ 법률지원: 피해 사실 관련 법률상담 및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 심리상담: 피해로 인한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상담 및 비용 지원 ◦ 의료지원: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비원
성폭력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업예술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계) ◦ 예술전공 대학, 대학원, 예술단체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19년 예정)

■ **지원절차**



*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에 연계할 수 있음.

■ 이용안내

운영시간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12시~13시)

- 전화상담 : 02-3668-0266, 02-1670-5678(내선번호 3번)

- 온라인 : (이메일) withu@kawf.kr / (비공개 게시판)

- 홈페이지 : <http://www.kawfartist.kr>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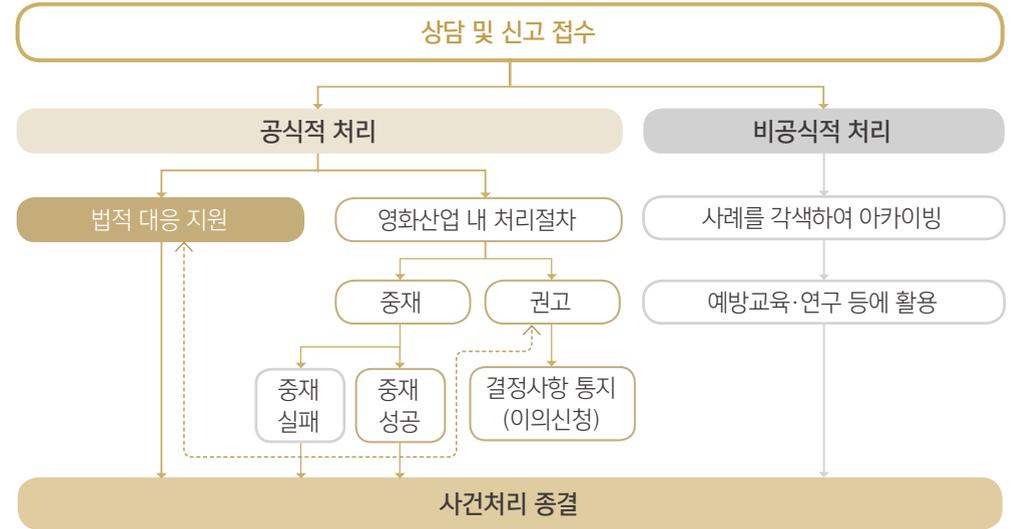
영화산업 내 성평등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2018년 3월 1일 공식 개소하였으며, (사)여성영화인 모임이 운영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영화산업에 종사 또는 참여하는 누구나(영화관련학과 포함)

■ 주요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지원 : 변호사 수임료(든든 자문 변호사),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증거 녹취비 등 지원 ○ 의료·심리치료비 : 지원 성폭력 응급키트 처치비,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심리상담비 등 지원 <p>※ 지원은 규정에 따라 든든의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p>
성폭력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예방교육 강사양성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상담·신고 접수 및 피해자지원 ○ 영화산업 내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성평등 영화정책 연구 및 정책 제안 / 영화인의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 지원절차



■ 이용안내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 전화 : 1855-0511(내선번호 2번) / 사무 : 02-730-1087

- 온라인 : with@solido.kr

- <http://solido.kr/harassment>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는 게임, 방송, 음악, 패션,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계 성폭력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의 신고, 접수부터 상담과 치유까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산업계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콘텐츠업 종사자

■ 주요지원

신고·상담·사후관리	신고 접수부터 상담 및 치유를 위해 유관 협력기관과 연계한 지원으로 2차 피해를 예방
의료 상담지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미술 및 음악치료 등의 상담 지원 - 접수상담(전문상담원) → 초기상담(심리치료 지원) → 사후관리(치유상담) - 심리상담 : 정신과 전문의 및 임상심리상담사와의 1:1 상담
법률 상담지원	법률고문가를 통해 피해사실에 대한 법률상담 및 민형사상 소송 자문지원. 필요시 협력기관과 연계한 소송지원 - 피해자 고소 요구 시 해바라기센터(경찰관 24시간 상주)와 연계하여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지원	콘텐츠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성폭력 예방캠페인,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지원 -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이수한 업체만 지원사업 참여 가능 또는 가산점 부여 등 적극적인 인식개선과 참여유도를 위해 논의중

■ 지원절차



■ 이용안내

운영시간 평일 10시 ~ 17시

- 전화 : 1670-5678(내선번호 ①번)

- 온라인 홈페이지 : bora@kocca.kr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체육계 (성)폭력 예방 및 체육인(선수 및 지도자) 인권 향상을 위해 2009년 11월에 개소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선수, 학부모, 지도자, 관계자

■ 주요지원

• 스포츠인권향상 교육 지원

교육명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	심!명!나! 정서지원 프로그램
교육대상	선수, 지도자, 심판, 학부모 등 (국가대표 선수단 포함)	국가대표 선수, 일반 선수
교육내용	체육계 (성)폭력 예방 대책, (성)폭력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대한체육회 관계 규정 안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이용 안내 등	각종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자아 형성 지원

• 상담 및 사건 신고 접수(피해자 사후 심리 상담, 사건 접수를 통한 징계 처리)

■ 이용안내

운영시간 평일 9시 ~ 18시

- 전화상담 : 02)418-1119

- 온라인 : sports119@sports.or.kr

- 홈페이지 : https://sports-in.sports.or.kr/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대하여 피해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 상담, 의학적 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전국 3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위기/지속)
의료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수사 법률	여성경찰관 상주,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작성, 진술조력인 지원을 통한 진술조력 제공 (만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무료법률구조지원
심리	심리학적 평가 및 치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치료,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기관으로 의료기관 및 피해자 보호시설연계,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상 담	피해자 및 가족 지속상담
수사·재판 절차 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신청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역 내 시설 연계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출 촬영물 삭제, 법률·의료 등 연계지원을 제공합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게시되고 상담원만 확인 가능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전화상담 : 02-735-8994

- 홈페이지 : <https://www.women1366.kr/stopds>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top.or.kr> / 대표번호 02-735-1050)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me too #성폭력 #문화예술계 #한마디

저도 미투를 했지만
가장 힘든 건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는 거..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모든 피해는
가해자의 책임
동의하지 않은 모든 행동은
'범죄'입니다.

작품=권력...
가해자의 작품을
소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성폭력 예방법(받는데
돌아다니지 않는다, 노출이
심한 옷을 삼간다, 술을 많이
먹지 않는다) 예방법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된다.
난 잘못한게 없다

지원 사업 받을 때
성폭력 교육 의무화하기,
가해자가 있는 단체는
지원금 끊기

피해자는 피해 사실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함 피해자가
책임져야 하는 미투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론화되면 좋겠음

이렇게 잠깐이 아니라
나라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입은 피해를
증명하지 않는 세상!

주변인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시급~
공동체에서 가해자를
배척하는 문화가 형성
되면 알아서 떠납니다~

당신의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팔들을
틀리지 마세요

제가 만약 지금 당신의
신체부위 어딘가를 만진다면
친근함의 표시라 생각하며 웃고
넘어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대가 동의 하지 않았다면
그 행동은 범죄임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저한테 한 말
그쪽이 언제들어도 기분 좋게
들을 자신 있죠?
그게 아니라면 하지마세요.
지금 그거 폭력 이니까

개발진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서울해바라기센터)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성수현 작가

감수진

박작가(피해자 대표)

이성미(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이수연(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고문헌

성희롱 예방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결과보고서(2018.6.1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영화 <리틀 포레스트> 촬영장내 생활수칙, (2018.10.9.) 조이뉴스 기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자료집(2018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2014년), (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외

“2차 피해? 2차 가해?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2016.5.17) 연세춘추

인 쇄 2018년 12월

발 행 2018년 12월

발행인 김재원

발행처 서울해바라기센터

주 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송빌딩 2층

전 화 02-745-0366

팩 스 02-745-0368

디자인 디자인세룬 02-2273-5167

사전 승인 없이 안내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